

**붙임**

**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개선 안내문**

**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」 개선사항 안내**

요양기관 귀하

- 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」 이 개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 
※ 관련근거: 건강보험법 제54조(급여의 정지) 제2호

□ 주요내용

-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한 당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자로 표출될 수 있도록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.

☞ 시행일: '21. 11. 25.(목)

※ 기존) 3개월 이상 국외출국자 → 개선) 3개월 미만 국외출국자까지 확대

※ 내국인 시범운영(1개월) 후 외국인까지 단계적 확대 적용

- 출국자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진료 및 처방(조제)이 불가능합니다.

※ 입국하였으나 출국자로 조회되는 경우,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하여 진료 가능

- 출국자 확인 방법

구분	경로
요양기관 정보마당	요양기관 정보마당( <a href="https://medicare.nhis.or.kr">https://medicare.nhis.or.kr</a> ) 공인인증서 로그인 수진자 자격확인 → 건강보험 자격정보 → 출국여부 → 출국자
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	수진자 자격조회 → 출국여부 → 출국자 또는 Y

□ 협조사항

- 바쁘시더라도 의료현장에서 방문환자의 진료 접수 및 처방(조제)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꼭!!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기타 문의사항 안내: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T.1577-1000)

2021.11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(직인생략)

참고

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」 개선 관련 다빈도 Q&A

Q1	해외로 출국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??
A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(급여의 정지) 제2호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.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</li> <li>○ 해외로 출국한 다음날부터 입국하기 전날까지 급여가 정지되며 국내에 입국하면 요양기관에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.</li> </ul>
Q2	수진자 자격조회 시 출국자로 확인되었는데 진료가능한가요?
A2	○ 수진자 자격조회 → 건강보험 자격정보 → 출국여부에서 출국자로 확인되면 진료(처방) 불가능합니다.
Q3	수진자 자격조회 시 출국자로 표출되지만 급여제한자로는 표출이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급여제한과 관계없이 출국여부에서 출국자로 확인된 경우 진료 및 처방이 불가능 합니다.</li> <li>○ 현재, 3개월 이상 국외체류, 국외업무종사 목적이 입증된 직장·지역가입자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의 경우 급여제한자로 표출되고 있습니다.</li> </ul>
Q4	당일 입국자가 진료 및 처방을 받기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하였는데 수진자 자격조회 시 출국자로 표시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해 주시고 입국자는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.</li> <li>○ 입국한 날의 다음날 수진자 자격조회에 적용되므로 입국 당일에는 출국자로 표시됩니다.</li> </ul>
Q5	수진자가 ①출국 사실이 없거나 또는 ②입국한지 수일이 경과되었음을 주장하는데 수진자 자격조회 시 출국자로 표시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후 입국자는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.</li> <li>○ 오류사항은 1577-1000 및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면 처리 하겠습니다.</li> </ul>